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재 우리 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통상 직무상의 행위로서 구체적인 지급대상·방법·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포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차수 명시(안 제7조 5항)

- 위원의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나. 장학금의 종류(안 제15조 신설)

- 장학금의 종류를 지역인재육성, 성적우수, 복지, 특기장학생 으로 정함

다. 장학생의 자격(안 제16조 신설)

- 장학생별 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함

라. 장학생의 선발인원(안 제17조 신설)

- 각급 학교별 선발인원 명시

마. 장학금액(안 제18조 신설)

- 장학생별 장학금액 명시

바. 장학금의 지급(안 제19조 신설)

- 선발된 후부터 해당학년 초에 지급

3.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0. 2. 18 ~ 3. 10(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3. 25)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기금 및 위원회”를 삽입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기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타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를 “이자수입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올리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장학금 지급”을 삽입하고, 같은 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여,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0조(종전의 제15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복지 장학금
4. 특기 장학금

제16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구에 주소(단,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은 예외로 한다)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자를 우선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 또는 입학예정자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성적이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합계 평균 석차 백분율이 5% 이내인 중학생. 단,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진학 후에 각 학년(1·2·3학년)에서 해당년도 성적이 5% 이내인 경우에만 장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2. 성적우수 장학생은 해당 학년 평균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5% 이내 해당되는 고등학생
3. 복지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대학생으로 품행이 바른 모범학생
4. 특기장학생은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제17조(장학생의 선발인원) ① 구청장은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각급학교 및 장학금의 종류별로 적정 배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 30%이내, 고등학생 60%이내, 대학생 10%이내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신청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장학금액) 장학금액은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중학생은 해당 연도의 공납금 전액을, 고등학생은 공납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대학생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지역인재육성 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선발된 후부터 해당 학년 초에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번호

장 학 증 서

○○ 학교 학년 반
○ ○ ○

위 학생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 학년도 ()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

마포구청장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u>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기금 및 위원회</p> <p>제2조(기금의 조성)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p>제5조(기금의 관리·운영) ①기금은 <u>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u> 운용하여야</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u>기금운용계획에 따라</u> 운용하여야 한</p>

현행	개정안
<p>한다.</p> <p>② (생략)</p> <p>③ 제3조에 의한 장학금은 기금 적립금의 <u>이자수입 범위 안에서</u> 지원한다.</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인</p> <p>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4인</p> <p>3. 기타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고 덕망 있는 마포구민 4인</p> <p>⑤ <u>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u></p> <p>⑥ (생략)</p> <p>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께 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3조에 따른</u> 장학금은 기금 적립금의 <u>이자수입 범위에서</u> 지원한다.</p> <p>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p> <p>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4명</p> <p>3. <u>그 밖에</u>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고 덕망 있는 마포구민 4명</p> <p>⑤ <u>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p>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회의 기능) (생략)</p> <p>1. ~ 3. (생략)</p> <p>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u>부의하는</u> 사항</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u>회의에</u> 올리는 사항</p>
<p>제9조(회의)</p> <p>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u>연2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p> <p>③ (생략)</p>	<p>제9조(회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u>연 2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u>1인</u> 과 서기 <u>1인</u>을 둔다.</p> <p>② (생략)</p>	<p>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u>1명</u> 과 서기 <u>1명</u>을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p>	<p>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u>제1항에</u>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p>

현 행	개 정 안
<p>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장학금 지급</u></p> <p><u>제15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복지장학금 4. 특기장학금 <p><u>제16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구에 주소(단,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은 예외로 한다)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자를 우선 선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 또는 입학예정자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성적이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합계 평균 석차 백분율이 5%이내인 중학

현행	개정안
	<p>생. 단,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진학 후에 각 학년(1·2·3학년)에서 해당 연도 성적이 5% 이내인 경우에만 장학생 신분을 유지한다.</p> <p>2. 성적우수 장학생은 해당 학년 평균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5% 이내 해당되는 고등학생</p> <p>3. 복지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대학생으로 품행이 바른 모범학생</p> <p>4. 특기장학생은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와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시·단위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고등학생</p> <p><u><신설></u> 제17조(장학생의 선발인원) ① 구청장은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각급 학교 및 장학금의 종류별로 적정 배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 30%이내, 고등학생 60%이내, 대학생 10%이내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신청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제18조(장학금액)</u> 장학금액은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중학생은 해당 연도의 공납금 전액을, 고등학생은 공납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대학생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지역 인재육성 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은 예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제19조(장학금의 지급)</u> 장학금은 선발된 후부터 해당 학년 초에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u>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생략)</p> <p><u>제16조(시행규칙)</u> (생략)</p>	<p><u>제18조(장학금액)</u> 장학금액은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중학생은 해당 연도의 공납금 전액을, 고등학생은 공납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대학생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지역 인재육성 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은 예외로 한다.</p> <p><u>제19조(장학금의 지급)</u> 장학금은 선발된 후부터 해당 학년 초에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보칙</u></p> <p><u>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u>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15조제2항과 같음)</p> <p><u>제21조(시행규칙)</u> (종전의 제16조와 같음)</p>